

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운영내규(21.1.20)

- 적용취지** : 학사운영 유연화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전공별 필요성이나 실정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학습 경험 및 결과 등의 논문대체실적을 설정·운영하여 석사학위 수여
- 관련규정** : 대학원 학칙 제42조(학위수여 및 취소) ① - 중 략 -
단,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과에서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대학원에 제출하고 이를 대학원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- 적용대상** :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요건을 승인 받은 학과의 2018년 3월 이후 석사학위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
- 신청자격** : ①, ② 조건을 충족 한 자
 ① 자격시험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
 ② 석사 3학기 이상 이수자중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제출하려는 자
 (단, 8학기 학생은 연구계획서 제출기한 내까지 대체실적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, 대체실적 미승인 시 학기연장 불가)
- 대체실적 승인요건** :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은 필수요건 1, 2를 충족해야 함.
 필수요건 1, 필수요건2에 대해서는 학과내규(대체요건, 심사절차)로 정하고, 이를 대학원이 승인해야 함.

구분	항목
필수요건 1	① 최소 전공 6학점 이상 교과목 추가 이수 ②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.0 이상
필수요건 2 (①, ②, ③ 중 선택)	① 연구보고서, 프로젝트보고서 등 연구 관련 성과물 ② 국·내외 학술지 게재 또는 국·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 등 ③ 기타 입상, 등단, 연주회, 특허, 발명 등

6. 시행절차



가. 심사대상자 신청(학생) :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기간 내

논문대체실적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 제출기간 내에 해당학과에 대체
실적 심사대상자 신청

나. 심사대상자 승인(학과) :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기간 내

연구계획서 승인기간 내에 해당학과에서는 논문대체실적 심사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
한 경우 논문대체실적 심사대상자를 학사포탈에 입력 후 승인

다. 대체실적 제출 (학생) : 심사대상자 승인 후로부터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내

논문대체실적 심사대상 승인자는 학기말 성적 등재일 까지 대체실적을 해당학과에 대
체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신청

라. 대체실적 심사/평가(학과) : 학기 중 학과 자율시행

- 1) 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는 논문대체실적 심사기간 내에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
성하거나 해당학과의 전체회의를 통해 대체실적을 심사(학과별로 자율적 시행)
- 2) 대체실적 평가는 대학원에서 승인한 대체실적 요건에 따라 합격, 불합격으로 평가
- 3)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
- 4) 대체실적 심사 관련 문서보관규정에 따라 제반 서류 학과 자체 보관

마. 대체실적 심사결과 입력 및 결과물 업로드(학과) : 학기말 성적등재 후 1주일 이내

- 1) 대체실적 심사결과 학사포탈에 입력
- 2) 대체실적 결과물 학사포탈에 업로드

바. 대체실적 승인(대학원) : 졸업사정 시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논문대체실적 승인

**사. 석사학위 수여(대학원) : 대학원 수료요건을 충족하고,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
실적을 승인 받은 경우 대학원 학위수여 절차에 따라 석사학
위 수여**

7. 시행시기 : 2019년 2학기부터 적용